

# 경청과 숙고 관계회복으로의 길

# 趙武濟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4회 사법시험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중재부장(1986-198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법관(1998-2004)



“저를 인터뷰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34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고향이자 모교인  
부산의 동아대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에 힘 쏟고 있는  
조무제 교수님을 만났다.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가 법관 그리고  
학자로서 지켜온 신념이 묻어났고,  
열은 미소가 서린 얼굴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가  
풍겼다. 한시코 인터뷰를 고사하던  
조무제 교수님이 <언론사람>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자.

**Q. 교수님께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 위원회 중재위원이셨습니다. 교수님 기억 속 당시 위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A.** 당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출범이 오래되지 않아 서울중재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중재부에는 사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산중재부의 경우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가 10건 이내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중재과정을 거치면서 성실한 의견교환을 통해 취하로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드물게 정정보도 문안까지 작성되었다가도 결국에는 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재부의 분위기는 자유로운 가운데 화기애애하였으며, 조정은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Q. 오랫동안 법관으로 또 퇴임 이후에는 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재판제도와 조정제도를 비교했을 때 조정제도가 갖는 장점 내지는 특징으로 무엇을 꼽으시지요?**

**A.**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 정도’에서 큰 차

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변론, 심리절차에 의한 주장 입증, 사실 인정 그리고 판단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승복이 항상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법이나 소송법에 대한 이해 부족, 증거 수집 및 제출 미비 등으로 인해 변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판력’의 범위도 의식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은 양당사자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 판결, 상소로 이어질 경우, 양당사자가 증거나 법률 적용상의 이·불리 그리고 소송비용, 시간, 노력 등을 감수해야 하므로 조정과정에서 양보의 의사가 점차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심리실에서 조정위원의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두드러지

1) 판결이 확정되면 생기는 효력 중 하나로 후에 같은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게 됩니다. 조정결과 또한 재판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수긍할 여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심급에서 당사자의 승복에 따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Q. 복잡다단하게 얽힌 현대사회를 반영하듯, 매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늘고 있고 사건 내용 또한 복잡하여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는 교수님만의 조정기법이 있으신가요?**

**A.** 저만의 특별한 조정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잘 듣고 기록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결론이 원만한 관계 즉, 분쟁 전에 당사자들이 유지했던 인간관계, 법률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숙고하는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요시간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몇 번씩 조정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처리시간 면에서 판결과 비슷한 정도로 길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승복한다면 상호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정의 이점을 생각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Q.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마음이 움직여 합의에 이르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조정 경험담은 무엇일까요?**

**A.**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가 취미로 수집한 애장품 여러 개(객관적 교환가치 합계도 소액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이웃에 살아 안면이 있는 B가 이 물품들을 잘못 알고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상호 폭행과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B의 유족이 A에게 사고로 인한 사망 시의 일실이익<sup>2)</sup>을 포함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와 번갈아 대면하게 되었는데, 조정위원회는 소송에서 겪게 될 입증의 어려움이나 당사자 간 좋았던 인간관계 등을 상기시키면서 끈기 있게 조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체의 금전 지급 없이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는 것으로 화해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2004년 대법관 퇴임 당시 하셨던 퇴임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 퇴임사에서 ‘보편적 사고’나 ‘여론에의 초연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매체가 가진 사실상의 영향력을 유념하자면 여론의 이름을 앞세운 보도라 하더라도 올바른 사실적 법적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사물의 본질을 벗어난 편견이나 선입감을 지닌 주의 또는 주장이야말로 우리가 사법판단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법관은 아무리 목청 높게 눈앞에 다가서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힌 주위로부터 초연하며 보편성을 띤 사색을 이어가는데에는 고독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만, 법관은 그 고독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8월 17일 대법관 퇴임사 중 일부 발췌

**Q. 퇴임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면, 법관이 고독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교수님께서 법관으로 재직하시던 시절, 어떻게 고독함을 극복하셨는지요?**

**A.** 저의 이야기는 당연한 원칙을 사법부를 떠나는 선배의 입장에서 노파심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한때의 사회 풍조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빠지는 것을 각자가 경계하자는 권유의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관이 만나게 되는 고독함은 법관이라는 지위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각자가 소화할 몫이라고 봅니다.

**Q.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들의 실업난 속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 ‘금수저 흡수저’라는 자조적인 유행어마저 생겨났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계신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문제 해결은 외부적 여건을 완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각자의 내면적 강인함을 실천하는 양면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위의 악화된 여건에 쉽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마침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진행 양재규(홍보팀장)·이미경(부산사무소장)  
정리 및 사진 염아영(홍보팀 직원)

2)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